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지원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감사위원회

목 차

- I. 감사 실시 개요 / 1
- II. 감사 결과 / 2
- III. 감사 결과 처분 요구 / 3

1. 개 요

□ 실 시 근 거

- 『아산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적용범위)
-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0조(수탁사무 감사)
-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감독 등)

□ 감 사 개 요

- 감 사 대 상 : 평생학습문화센터 문화유산과
 - 관련기관: 외암골영농조합법인, (주)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사업단
- 감 사 기 간
 - 사전조사 : 2019. 6. 13. ~ 6. 21.
 - 본 감 사 : 2019. 7. 1. ~ 7. 3. (기간 중 3일간)
- 감 사 범 위 : 2017. 1. 1. ~ 2019. 5. 31.
- 감 사 인 원 : 회계감사팀장 외 5인

□ 기 본 현 황

- 저잣거리 시설개요
 - 위치·면적 : 송악면 역촌리 183-2번지 일원 · 63,949㎡
 - 주요시설
 - 건 물 : 24개동 연면적 1,671.08㎡ (와가 3동, 초가 21동)
누각 1, 정자 4, 화장실 2, 안내소 1 등
 - 주차장, 난전, 야외놀이마당, 수로, 유실수·야생화 단지 등
 - 사 업 비 : 122억 원(국비 56, 도비 11, 시비 55)

- 사업기간 : 2010. 10. 15. ~ 2014. 12. 22.(4년)
- 상가임대 현황
 - 업체수 : A(***) 외 6개소
 - 연간사용료 : 총 79,763천원 (2019년 기준)

□ 감사 중점 사항

- 저잣거리 지원 위탁금·보조금 등 예산 회계집행 적정 여부
- 공유재산 임대 및 관리 상황 점검
- 기타 운영전반 업무처리 및 제반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문제점 및 개선사항 파악으로 향후 시설 운영의 활성화에 반영

II. 감사 결과

■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 합 계 | | | 변상명령 (금액) | 징계 (인원) | 시정 (금액, 인원) | | 주의 (인원) |
|-----|------------|----|--------------|------------|------------------------|------------|------------|
| 건수 | 금액 | 인원 | | | | | |
| 9 | 25,592,060 | 4 | - | - | 2 (25,592,060 / 1명) | | 6 (3명) |
| / | | | 개선 | 권고 | 통보 | 고발 (인원) | 현지조치 |
| | | | - | - | 1 | - | - |

Ⅲ. 감사결과 처분 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연번 | 제 목 | 처분요구 종 류 | 금 액 (인원) | 비고 |
|----|------------------------------|-------------------------|--------------------------|----------|
| 계 | 9건 | 시 정 2 주 의 6 통 보 1 | 10,315,950 15,276,110 | 추징 회수 |
| 1 |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소홀 | 시정 | 10,315,950 | 추징 |
| 2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처분 부적정 | 주의 | | |
| 3 | 문화예술공연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지도감독 소홀 | 주의 | | |
| 4 | 전통공예체험 보조사업 수익금 정산 부적정 | 주의 | | |
| 5 | 체험프로그램 강사 등 인건비 원천징수 소홀 | 주의 | | |
| 6 | 2018년도 저잔거리 활성화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 주의 | | |
| 7 | 지방보조금 운영경비 등으로 집행 부적정 | 주의 | | |
| 8 | 지방보조사업비 부당 집행 및 관리감독 소홀 | 시정 | 15,276,110 | 회수 |
| 9 |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 통보 | | |

2. 현지처분사항 일람표

(단위:원)

| 연번 | 제 목 | 처분요구 | 금액 |
|----|---------|------|----|
| 계 | “해당 없음” | | |
| | | |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제 목】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소홀
- 【부 서 명】 평생학습문화센터 문화유산과
- 【행 정 상】 시 정
- 【재 정 상】 추 징 (10,315,950원)
- 【지적내용】

가. 현 황

[표 1]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공유재산 사용료 미징수 현황

(단위:원)

| 납부자명 | 상 호 | 부과일자 | 미징수 금액 | 지급보증 징구 여부 | 비 고 |
|-------|-------|------------|------------|---------------|------------------|
| 합 계 | | | 10,315,950 | | |
| 부 가 세 | | | 1,057,780 | | 2018년도 1기분 포함 |
| *** | ***** | 2018.4.2. | 1,661,940 | ○ | 허가 취소 |
| | | 2018.7.2. | 1,599,040 | | " |
| | | 2018.10.1. | 1,558,340 | | " |
| | ** | 2019.4.15. | 4,438,850 | X | 허가 사용중 |

※ 문화유산과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며, 그에 따른 사용료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 그러나 문화유산과에서는 2018년도에 8건의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사용자에게 사용료 지급보증 보험증권을 징구하여 위 [표 1]과 같이 미납 사용료에 대하여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아 2019년 2월 허가 취소한 ‘*****’ 운영자 ***의 2018년도 분 미납 사용료 5,439,610원(부가세 포함)을 미징수하고 있으며, 2019년도 사용허가 시에는 허가 조건에 사용료 지급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8개소 모두 미 징구하여 위 [표 1] 과 같이 ‘**’ 운영자 ***의 1기분 미납 사용료 4,876,340원(부가세 포함) 등 분납 사용료 미납 시 채권 확보를 불투명하게 관리하였다.

【처분요구】

문화유산과장은

- 미 징수한 공유재산 사용료 10,315,950원을 추징하시기 바라며, 2019년 사용·수익 허가한 사용자에게 대하여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료 지급 이행보증서를 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처분 부적정

【부 서 명】 평생학습문화센터 문화유산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문화유산과(前 외암민속마을관리사무소)에서는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의 상가 9개동에 대하여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잣거리사업단에 민간 위탁하여 임대차 운영을 관리하였으나 2018년 1월부터는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추진경과>

- 2015.4.1.~ : 저잣거리사업단에 위탁하여 상가 임대차 계약
[표 1] 최초 임차 계약일 참조
- 2017.11.8. : 2018년 저잣거리 시설물 운영 계획 보고(시장 결재)
- 2017.11.21. : 저잣거리 운영위원회 개최, 직영 전환 후 임차인의 상가 연장 계약 요구 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감안하여 2년간(2018~2019년) 현 계약자에게 사용수익 허가하기로 결정
- 2017.12.8. : 2018년 저잣거리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보고(시장 결재)
2018 ~ 2019년(2년간) 한시적 사용수익 허가
- 2018.1.1.~ : 직영체재 전환
- 2018.1.2. :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검토 보고(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저잣거리 사업단과의 최초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현 계약자에게 공유재산 사용 허가하기로 결정 및 통보)
[표 1] 1 ~ 4차 사용허가 참조
- 2018.12.6. : 2019년도 저잣거리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보고(허가기간 동일)

- 2018.12.7.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연장신청 안내문 각 사용자에게 통보
- 2018.12.18. : 신청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12.21.까지 미신청시 포기 간주)
- 2018.12.24. : 상인회 무기한 휴장 고지(2018.10.16.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¹⁾에 따라 10년간 사용권 보장 요구)
- 2018.12.27. : 상인회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서 송부(2018.1.1.허가조건에 명시한 대로 저잣거리사업단과의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급 적용 불가 안내)
- 2019.1.2. : 담당 공무원 변경
- 2019.1.22. : 저잣거리 사용·수익허가 관련 보고(과장 전결)
☞ 최초 사용허가(2018년) 후 5년 간 수익계약 관련 검토 보고
- 2019.1.28. : 저잣거리 사용·수익허가 관련 보고(소장 전결)
☞ 상가시설 7개소 2022년 까지 일괄 연장 허가 결정
- 2019.1.28. ~ 29. : 사용자별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접수 및 허가통보

[표 1] 2018년 저잣거리 상가별 사용허가 결정 내역

| 상가별 | 최초 임차 계약일 | 계약 만료일 | 1 차 사용허가 | 2 차 사용허가 | 3 차 사용허가 | 4 차 사용허가 |
|---------|-------------|-------------|---------------------------|---------------------------|---------------------------|---------------------------|
| A (***) | 2015.4.1. | 2017.12.31. | 2018.1.1.~ 2018.12.31. | 2019.1.1.~ 2019.12.31. | 2020.1.1.~ 2020.3.31. | - |
| B (***) | 2015.4.1. | 2017.12.31. | | | | |
| C (***) | 2015.4.1. | 2017.12.31. | | | | |
| D (***) | 2015.6.10. | 2017.12.31. | 2018.1.1.~ 2018.12.31. | 2019.1.1.~ 2019.12.31. | 2020.1.1.~ 2020.6.9. | - |
| E (***) | 2015.6.10. | 2017.12.31. | | | | |
| F (***) | 2015.7.21. | 2017.12.31. | 2018.1.1.~ 2018.12.31. | 2019.1.1.~ 2019.12.31. | 2020.1.1.~ 2020.7.20. | - |
| G (***) | 2016.8.19. | 2017.12.31. | 2018.1.1.~ 2018.12.31. | 2019.1.1.~ 2019.12.31. | 2020.1.1.~ 2020.12.31. | 2021.1.1.~ 2021.8.18. |
| H (***) | 2016.10.11. | 2017.12.31. | 2018.1.1.~ 2018.12.31. | 2019.1.1.~ 2019.12.31. | 2020.1.1.~ 2020.12.31. | 2021.1.1.~ 2021.10.10. |
| I (***) | 2016.12.1. | 2017.12.31. | 2018.1.1.~ 2018.12.31. | 2019.1.1.~ 2019.12.31. | 2020.1.1.~ 2020.12.31. | 2021.1.1.~ 2021.11.30. |

※ 2018.1.2. 「저잣거리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접수검토 보고서」 재구성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당초 5년 ⇄ 10년으로 변경)

[표 2] 2019년 저잣거리 상가 연장 사용허가 내역

| 상가별 | 최초 임차 계약일 | 임차 계약 만료일 | (당초)사용 수익 허가 | 변경 사용허가 | 당초 대비 연장 기간 | 비고 | |
|---------|-------------|-------------|---------------------------|--|--|-----------|--|
| A (***) | 2015.4.1. | 2017.12.31. | 2018.1.1.~ 2020.3.31. | 2019.1.1. ~ 2022.12.31. (2018년부터 5년) | 2년 9월 | | |
| B (***) | 2015.4.1. | 2017.12.31. | | | | | |
| C (***) | 2015.4.1. | 2017.12.31. | | | | | |
| D (***) | 2015.6.10. | 2017.12.31. | 2018.1.1.~ 2020.6.9. | | 2019.1.1. ~ 2022.12.31. (2018년부터 5년) | 2년 6월 21일 | |
| E (***) | 2015.6.10. | 2017.12.31. | | | | | |
| F (***) | 2015.7.21. | 2017.12.31. | 2018.1.1.~ 2020.7.20. | | | 2년 5월 11일 | |
| H (***) | 2016.10.11. | 2017.12.31. | 2018.1.1.~ 2021.10.10. | | | | |

※ 2019.1.28. 「2019년도 저잣거리 공유재산 사용허가 통보내역」 재구성
I(***), J(***) 허가 취소

나. 위법·부당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 수익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 또한, 2018.1.2. 저잣거리 9개동 기 사용자에게 통보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 제2조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사용기간은 2018.1.1. ~ 2018.12.31. 까지 1년 단위로 하되 최초 계약일인 저잣거리사업단과의 상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문화유산과(前 외암민속마을관리사무소)에서는 위 <추진경과>에서 볼 수 있듯 2017년 저잣거리 상가시설물의 민간위탁이 종료되고 2018년부터 직영체제로의 운영관리를 준비하면서 내부 검토 및 저잣거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 임차인에 대한 영업권 보장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계약갱신 요구 등)에 근거해 [표 1] 과 같이 최초 임차 계약일 기준 5년간 사용·수익 허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고, 2018.1.2. 당시 임차인 모두 이와 같은 허가조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기간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해 왔다.
- 그에 따라 문화유산과에서 2018.12.7. 사용자에게 다음년도 사용·수익허가 연장 신청을 안내하였음에도 사용자들은 2018.10.16.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소급 적용하여 10년간 사용승인을 요구해 왔으나, 감독부서인 문화유산과는 답변서 등을 통해 법령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당초 승인된 기간에 대하여 허가됨을 일관되게 안내하였다.
- 그러나 2019.1.2. 담당자 변경 후 [표 1]의 당초 상가별 사용허가 계획 및 허가조건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하게 하여야 함이 적정함에도 [표 2]와 같이 특별한 사유 없이 2018년 사용수익 허가기간 포함 5년간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달리하여 상가시설물 7개소에 대하여 2022년 까지 일괄 사용허가 처리하는 등 당초 계획대비 최소 1년 2월에서 최대 2년 9월을 부적정하게 연장허가 하여 기존 사용자에게 특혜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내 누구나 공유재산 사용을 위하여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처분요구】

문화유산과장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부당한 사용·수익허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문화예술공연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지도감독 소홀

【부 서 명】 평생학습문화센터 문화유산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1] 문화예술 공연 개요

- 기 간: 2018. 4. ~ 11.(연 56회, 토·일요일 및 공휴일)
- 장 소: 외암마을 저잣거리
- 사 업 비: 60,000천원(총 사업비 91,200천원)
- 사업내용: 2018 외암마을 저잣거리 문화예술 공연

[2] 추진경위

- 2018. 3. 16. : 2018 외암마을저잣거리 문화예술공연 보조금 교부결정
- 3. 23. : 2018 외암마을저잣거리 문화예술공연 보조금 지급
- 3. 23. ~ 3. 27.(4일간) : 문화예술공연 참가단체 모집 공고
 - * 외암마을 홈페이지
- 3. 23. ~ 3. 27.(4일간) : 문화예술공연 참가단체 모집 서류접수
 - * 2개 단체(OOOOOOOOOO협회, (주)OOOOOO)
- 3. 30. : 문화예술공연 사업 PT심사
 - * 1개 단체 참여(OOOOOOOOOO협회)
- 4. 5. : 외암마을 저잣거리 문화예술 공연 계약
(외암골영농조합법인, OOOOOOOOOO협회)
- 4. 7. : 2018 외암마을저잣거리 문화예술 상설공연[개시]
- 4. 11. : 2018 외암마을저잣거리 문화예술 상설공연비 지급(선금)

- 7. 9. : 2018 외암마을저잣거리 문화예술 상설공연비 지급(잔금)
- 11. 3. : 2018 외암마을저잣거리 문화예술 상설공연[종료]
- 2019. 1. 18. : 2018 외암마을저잣거리 문화예술공연 정산보고
- 4. 11. : 2018 외암마을저잣거리 문화예술공연 정산검사 보고[적정]

나. 위법·부당내용

① 보조사업 입찰공고 방법 미준수 등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행사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8년 외암골영농조합법인 외암마을 저잣거리 문화예술 공연’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서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보면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보조사업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고,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12호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전자조달을 위한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으로 정하고 있다. 단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등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의 창의성과 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과 계약 상대자 결정절차’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사업명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함으로 **외암골영농조합법인**에서 총91,200천원의 외암마을 저잣거리 문화예술 공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 60,000천원의 ‘2018 외암마을저잣거리 문화예술공연 참가단체 모집 심사계획’ 공고는 사업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보조금 교부 및 보조사업의 지도·점검기관인 외암민속마을관리사업소(현,문화유산과) 등에 의뢰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인 ‘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입찰공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접수마감 3일전에, 외암마을영농조합법인의 자체 홈페이지에만 4일 동안 입찰 공고 및 서류접수를 병행 2개 단체의 참가신청서를 접수받아, 최종심사에 참여한 OOOOOOOO협회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또한 공고한 문화예술공연 심사계획에는 사업의 주요내용인 예산액을 누락한 채 공고하고, 참여인원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된 사업계획서 및 단체소개 발표(PT자료)에 따른 심사위원의 평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② 보조사업 선금 등 대가 지급 방법 부적정

- 「지방계약법」 제18조(대가의 지급)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에는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고,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에는 용역 계약 등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선금

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선금 지급에 따른 채권확보 방법으로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으며, 보증기간은 선금지급일 이전부터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선금지급조건으로 채권확보조치 및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을 명시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러함에도 **외암골영농조합법인**에서는 00000000협회와 2018.4.5. 맺은 공연계약서의 대금의 지급방법으로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 계약금으로 전체금액의 50%를, 차액 50%는 하반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예술 공연을 2018.4.7. 시작하여 2018.11.3. 종료하였음에도 선금급 지급 등에 따른 채권확보 조치 및 사용내역서 제출, 검사조서 작성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관련서류 구비 등을 이행하지 않고, 2018.4.11.과 2018.7.9.에 각각 30,000천원을 지급하여 사업비 60,000천원에 대한 집행을 마쳤다.

③ 지방보조사업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에는 지방보조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외암마을관리사업소**에서는 보조사업 단체에서 관련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였음에도, 외암마을영농조합법인 자체 홈페이지만의 게시에 따른 입찰공고 및 선금 등 대가 지급방법에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2018.11.3. 사업종료 후 2019.1.18. 정산보고에 따라 2019.4.11. 정산검사 보고를 완료함에 있어, 사업추진 절차 및 실적보고에 따른 증빙서 제출이 미흡함에도 사업이 이상 없이 완료된 것으로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처분요구】

문화유산과장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도감독 및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전통공예체험 보조사업 수익금 정산 부적정

【부 서 명】 평생학습문화센터 문화유산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사 업 명 : 2018 외암마을저잣거리 전통공예체험
- 보조사업자 : 외암골영농조합법인
- 사업기간 : 2018. 3. ~ 2018. 12.
- 사 업 비 : 19,000천원(시비 100%)

나. 위법·부당내용

-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문화유산과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아산시에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야 했다.

- 그런데도 문화유산과에서는 2018년 외암마을 저잣거리 전통공예체험 민간경상보조금 교부결정시 수익금 사용·반환하는 교부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자인 외암골영농조합법인이 관광객들로부터 아래표와 같이 체험비 명목의 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수익금 발생 및 사용내역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별다른 조치 없이 보조사업 정산보고가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그 결과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관리를 투명하지 않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전통공예체험 체험비 현황

| 체험명 | 체험비(원) | 체험명 | 체험비(원) |
|-----------|--------|----------|--------|
| 한지봉지등 만들기 | 8,000 | 오카리나 만들기 | 8,000 |
| 전통인형 옷입히기 | 8,000 | 색지제기 만들기 | 1,000 |

【처분요구】

문화유산과장은

-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반영하는 등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체험프로그램 강사 등 인건비 원천징수 소홀

【부 서 명】 평생학습문화센터 문화유산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2018 체험프로그램별 강사인건비 등 원천징수 미처리 내역

(단위:원)

| 프 로 그램명 | 강사명 | 지 급 건 수 | 지급액 | 추 가 원 천 징 수 대 상 액 | | | 소득구분 | 비 고 |
|---------|-----|---------|------------|-------------------|---------|---------|------|-----|
| | | | | 계 | 소득세 | 지 방 소득세 | | |
| 합계 | 10명 | 52건 | 23,795,500 | 884,620 | 804,310 | 80,310 | | |
| 문화예술연공 | A | 2건 | 1,800,000 | 118,800 | 108,000 | 10,800 | 기타 | |
| | B | 5건 | 3,150,000 | 90,070 | 81,890 | 8,180 | 사업 | |
| 전통공예체험 | C | 10건 | 3,072,000 | 101,340 | 92,160 | 9,180 | 사업 | |
| 전통악기체험 | D | 11건 | 3,792,000 | 125,100 | 113,760 | 11,340 | 사업 | |
| | E | 1건 | 180,000 | 11,880 | 10,800 | 1,080 | 기타 | |
| 전통의상체험 | F | 12건 | 5,650,000 | 180,130 | 163,760 | 16,370 | 사업 | |
| 전통한지체험 | G | 7건 | 4,131,500 | 123,980 | 112,740 | 11,240 | 사업 | |
| | H | 1건 | 960,000 | 63,360 | 57,600 | 5,760 | 기타 | |
| | I | 1건 | 400,000 | 26,400 | 24,000 | 2,400 | 기타 | |
| | J | 2건 | 660,000 | 43,560 | 39,600 | 3,960 | 기타 | |

※ 세부내역 : 붙임(엑셀 자료)

나. 위법·부당내용

○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같은 법 제127조~129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3의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도록 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중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18.4.1.시행)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도

| 구 분 | '18년 1月~3月 | '18년 4月~12月 | '19년 이후 |
|----------|------------|-------------|------------|
| 지급액 | 25만원 | 16만 6,666원 | 12만 5,000원 |
| 필요경비 공제율 | 80% | 70% | 60% |
| 기타소득금액 | 5만원(과세최저한) | | |
| 소득세 | 0원 | | |

○ 그러함에도 외암골영농조합법인에서는

- 2018 저잔거리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개월에 걸쳐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매월 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소득세 : 사업소득의 3.3%)를 하여야 하고,
- 아울러 단기적으로 사역한 강사인건비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액(2018. 3월까지 소득액의 4.4%, 2018. 4.월부터 12월까지 소득액의 6.6%)을 정확히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 상기의 2018 체험프로그램별 강사인건비 등 미 원천징수 내역과 같이 000 등 10명으로부터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에 따른 소득세 804,310원과 지방소득세 80,310원 등 총 884,620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문화유산과장은

- 「소득세법」 등 규정을 준수하여 인건비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2018년도 저잣거리 활성화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부 서 명】 평생학습문화센터 문화유산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천원)

| 연 번 | 사 업 명 | 보 조 사 업 자 | 정 산 서 접 수 일 | 정 산 검 사 일 | 보 조 금 집 행 현 황 | |
|--------|-------------|-----------------------|----------------------------|-----------------------|---------------------------------|--------------------|
| | | | | | 교 부 액 | 집 행 액 |
| 계 | 5 건 | | | | 202,350 | 202,366 |
| 1 | 전통의상 체험 | 외암골영농 조합법인 | 2019.1.18. | 2019.4.11. | 33,250 | 33,255 (자부담 5) |
| 2 | 한지만들기 체험 | 외암골영농 조합법인 | 2019.1.18. | 2019.4.11. | 30,400 | 30,400 |
| 3 | 전통악기 체험 | 외암골영농 조합법인 | 2019.1.18. | 2019.4.10. | 28,500 | 28,500 |
| 4 | 전통공예품 체험 | 외암골영농 조합법인 | 2019.1.18. | 2019.4.11. | 19,000 | 19,000 |
| 5 | 전통문화예술공연 | 외암골영농 조합법인 | 2019.1.18. | 2019.4.10. | 91,200 | 91,211 (자부담 11) |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

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와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라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문화유산과(구 외암민속마을관리소)에서는

- 2018년도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활성화 보조사업으로 외암골영농조합법인(대표 000)에 “전통의상체험”외 4개사업에 202,350천원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9. 1. 18. 5개의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접수함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 했는지와 규정에 따라 집행하였는 지 등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접수·보관만 하였을 뿐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 2019. 4. 감사위원회에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요청 민원이 접수된 이후 2019. 4. 10. ~ 4. 11. 2일에 걸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요약본만으로 정산검사를 “이상없음” 으로 처리함으로써 보조금 정산서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문화유산과장은

-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지방보조금 운영경비 등으로 집행 부적정

【부 서 명】 평생학습문화센터 문화유산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① 보조단체(저잔거리 사업단) 상근직원 인건비 부적정 지출 현황

| 프 로 그램명 | 인건비 지급 대상자 | | | 지 급 일 | 지 급 액 (원) | 상근직원 근 거 |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 | |
| 계 | | | | 10 회 | 18,000,000 | |
| 전 통 의 체 상 험 | 저 잔 거 리 사업단 및 외암골 영 농 조 합 인 | 과 장 | A | 2018. 3. 30. | 1,800,000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공제 |
| | | | | 2018. 4. 30. | 1,800,000 | |
| | | | | 2018. 5. 28. | 1,800,000 | |
| | | | | 2018. 6. 25. | 1,800,000 | |
| | | | | 2018. 7. 25. | 1,800,000 | |
| | | | | 2018. 8. 27. | 1,800,000 | |
| | | | | 2018. 9. 21. | 1,800,000 | |
| | | | | 2018. 10. 25. | 1,800,000 | |
| | | | | 2018. 11. 23. | 1,800,000 | |
| | | | | 2018. 12. 26. | 1,800,000 | |

※ 매월 기본급 1,500,000원, 식대 100,000원, 교통비 200,000원 정액 지급

② 사무실(저장거리 사업단) 보안경비 용역비 부적정 지출 현황

| 프 로 그 램 명 | 사 용 자 | 채 주 | 지 급 일 | 지 급 액(원) |
|-------------------|---------------------------|-----------|---------------|----------|
| 계 | | | 7 회 | 663,500 |
| 전 통 의 상 체 험 | 외암골영농 조합법인 (대표 000) | ***** (주) | 2018. 6. 25. | 198,500 |
| | | | 2018. 7. 20. | 132,500 |
| | | | 2018. 8. 7. | 66,500 |
| | | | 2018. 9. 4. | 66,500 |
| | | | 2018. 10. 10. | 66,500 |
| | | | 2018. 11. 9. | 66,500 |
| | | | 2018. 12. 11. | 66,500 |

③ 사무실(저장거리 사업단) 복사기 유지보수비 부적정 지출 현황

| 프 로 그 램 명 | 채 주 | 사용자 | 지 급 일 | 지 급 액 |
|-------------------|---------------|------------------|---------------|-----------|
| 계 | | | | 1,100,000 |
| 전 통 의 상 체 험 | **** 솔 루 션 | 외암골영농 조 합 법 인 | 2018. 3. 30. | 110,000 |
| | | | 2018. 4. 16. | 110,000 |
| | | | 2018. 5. 11. | 110,000 |
| | | | 2018. 6. 11. | 110,000 |
| | | | 2018. 7. 11. | 110,000 |
| | | | 2018. 8. 12. | 110,000 |
| | | | 2018. 9. 12. | 110,000 |
| | | | 2018. 10. 10. | 110,000 |
| | | | 2018. 11. 9. | 110,000 |
| | | | 2018. 12. 11. | 110,000 |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2조의 4제1항에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의4제3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 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발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개정 2017. 9. 25.) 제V번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제④번에 따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함에도 문화유산과(전 외암민속마을관리소)에서는

보조사업자 외암골영농조합(대표 000)이 2018년도 전통의상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저잣거리사업단에 상근직원²⁾으로 근무하는 A에게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10개월) 인건비

2) A는 외암골영농조합법인 및 저잣거리사업단에 겸직하고 있음

18,000,000원을 비롯해 보안경비 용역비 663,500원, 복사기유지 보수비 1,100,000원 등 총 19,763,5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는데도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이에 대하여 외암골영농조합법인에서는 A는 상근 근로자가 아니며 전통의상 체험 운영을 위해 강사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본인이 희망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처분요구】

문화유산과장은

- 「지방재정법」,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비를 상근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지방보조사업비 부당 집행 및 관리감독 소홀

【부 서 명】 평생학습문화센터 문화유산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회 수 (15,276,110원)

【지적내용】

가. 현 황

① 2017 체험용 악기(가야금) 구입 및 2018 악기 임차 현황

| 악기(가야금) 구입 | 악기(가야금) 임차 | 위법·부당 사항 |
|--|---|--|
| ○ 사업명 : 2017년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총 68,000천원 국34,000, 시34,000) ○ 보조사업자 : 외암골영농조합법인(대표 000) ○ 구입일 : 2017. 9. 4. ○ 구입대수 : 40대 ○ 구입비 : 12,000천 원 ○ 구입목적 :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고급화 | ○ 사업명 : 2018 전통악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28,500천 원) ○ 보조사업자 : 외암골영농조합법인(대표 000) ○ 임차일 : 2018. 4. ~ ○ 임차대수 : 40대 ○ 임차료 : 5,000천 원 ○ 임차목적 : 전통악기 연주 체험 ※ 임대자 : (주)외암민속마을저장거리사업단(대표 000) | ○ 2017년 외암골영농조합법인(대표 000)이 구입한 악기(가야금)를 ○ 2018년 동일 법인이 (주)외암민속마을저장거리사업단(대표 000)에서 같은 악기(가야금) 40대를 임차하는 것으로 임차료 5,000천 원을 부당하게 집행함 |

② 2018 한지체험 재료(닥죽·닥풀)구입 현황

(단위:원)

| 구분 | 구입일 | 구입내역 | 수량 | 단가 | 금액 | 위법·부당 사항 |
|----|-------------|----------|-----|---------|------------|---|
| 계 | | | | | 10,276,110 | ○ 보조사업자 외암골영농조합법인(대표 000)이 (주)외암민속마을저장거리사업단(대표 000)에서 |
| 1차 | 2018. 7.21. | 닥죽(10kg) | 16 | 220,000 | 3,520,000 | |
| | | 닥풀(100g) | 10 | 11,000 | 110,000 | |
| 2차 | 2018. 8.26. | 닥죽(식) | 249 | 8,000 | 1,992,000 | |

| | | | | | | |
|----|-------------|-------|-----|-------|-----------|--------------------------|
| 3차 | 2018. 9.18. | 닥죽(식) | 100 | 8,000 | 800,000 | 한지체험 재료(닥죽·닥풀)를 구입(내부거래) |
| 4차 | 2018.11. 5. | 닥죽(식) | 381 | 8,000 | 3,048,000 | |
| 5차 | 2018.12.31. | 닥죽(식) | 101 | 8,000 | 803,110 | |

※ (닥죽) : 전통한지 원료, (닥풀): 지료액이 점성을 유지하고 긴 섬유의 침강 방지 등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법」제48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함에도 문화유산과(전 외암민속마을관리소)에서는**

2018년도에 외암골영농조합법인(대표 000)에게 저잣거리 활성화를 위해 전통악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비 28,500,000원을 지원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 2017년도에 외암골영농조합법인(대표 000)이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지원 보조 사업비로 구입한 가야금 40대를 2018년도에 동일 법인인 외암골영농조합법인이 (주)외암민속마을저잣거리사업단(대표 000)에서 가야금 40대를 임대하는 것으로 5,000,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 또한, 외암골영농조합법인(대표 000)이 2018년 전통한지만들기 체험프로그램 보조사업비 30,400,000원을 집행함에 있어 (주)외암민속마을저잣거리사업단(대표 000)에서 한지체험 재료(닥죽 및 닥풀)를 구입하는 것으로 총 5차에 걸쳐 10,276,11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음에도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이에 대하여 외암골영농조합법인에서는 저잣거리사업단으로 지급한

가야금 임대료 및 한지재료 구입비는 관계자에 대한 식사비 등 각종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처분요구】

문화유산과장은

-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결정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부당하게 지급되어 목적 외로 사용한 가야금 임대료 및 한지 체험 재료비 15,276,11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부 서 명】 평생학습문화센터 문화유산과
 【행 정 상】 통 보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표1]저잔거리 시설물 증축현황

| 구분 | 동 | 명칭 | 용도 | 합계 | 신축 | 소계 | 증1차 | 증2차 | 증3차 |
|----|-------|----------|--------|----------|----------|--------|-------|-------|-------|
| 합계 | 27동 | | | 1,751.08 | 1,177.57 | 573.51 | 74.39 | 68.12 | 431 |
| 주동 | 1동 | 기념품판매체험관 | 소매점 | 115.92 | 115.92 | | | | |
| “ | 2동 | A | 휴게음식점 | 105.50 | 50.40 | 55.10 | 8.80 | 11.68 | 34.62 |
| “ | 3동 | B | 소매점 | 80.89 | 50.40 | 30.49 | 3.97 | | 26.52 |
| “ | 4동 | C | 휴게음식점 | 121.02 | 45.90 | 75.12 | 2.83 | 12.20 | 60.09 |
| “ | 5동 | D | 일반음식점 | 118.83 | 75.60 | 43.23 | 18.48 | | 24.75 |
| “ | 6동 | “ | 일반음식점 | 42.93 | 42.93 | | | | |
| “ | 7동 | “ | 일반음식점 | 55.44 | 55.44 | | | | |
| “ | 7-1동 | “ | 일반음식점 | 67.20 | | 67.20 | | | 67.20 |
| “ | 8동 | E | 일반음식점 | 70.07 | 44.55 | 25.52 | | 25.52 | |
| “ | 9동 | “ | 일반음식점 | 60.00 | 36.00 | 24.00 | 24.00 | | |
| “ | 10동 | “ | 일반음식점 | 21.87 | 21.87 | | | | |
| “ | 10-1동 | “ | 일반음식점 | 74.80 | | 74.80 | | | 74.80 |
| “ | 11동 | 화장실 | 문화집회시설 | 37.80 | 37.80 | | | | |
| “ | 12동 | F | 휴게음식점 | 101.25 | 68.04 | 33.21 | | | 33.21 |
| “ | 13동 | G | 일반음식점 | 104.40 | 50.40 | 54.00 | 12.15 | 7.20 | 34.65 |
| “ | 14동 | H | 일반음식점 | 180.00 | 116.28 | 63.72 | | 11.52 | 52.20 |

| | | | | | | | | | |
|---|-----|----------|--------|-------|-------|-------|------|--|-------|
| “ | 15동 | 저잣거리 사무실 | 관리사무소 | 63.36 | 63.36 | | | | |
| “ | 16동 | 안내소 | 문화집회시설 | 36.63 | 36.63 | | | | |
| “ | 17동 | 누각 | 문화집회시설 | 34.02 | 34.02 | | | | |
| “ | 18동 | 화장실 | 문화집회시설 | 59.31 | 59.31 | | | | |
| “ | 19동 | 락사업단 | 소매점 | 61.68 | 34.56 | 27.12 | 4.16 | | 22.96 |
| “ | 20동 | 육모정자 | 문화집회시설 | 14.96 | 14.96 | | | | |
| “ | 21동 | 사모정자 | 문화집회시설 | 5.76 | 5.76 | | | | |
| “ | 22동 | 사모정자 | 문화집회시설 | 5.76 | 5.76 | | | | |
| “ | 23동 | 사모정자 | 문화집회시설 | 5.76 | 5.76 | | | | |
| “ | 24동 | 저수조지하1층 | 문화집회시설 | 80.00 | 80.00 | | | | |
| “ | 25동 | 쓰레기집하장 | 문화집회시설 | 25.92 | 25.92 | | | | |

※ 증축1차 : 2015.05.20. / 증2차 : 2016.06.01. / 증3차 : 2017.11.21.

나. 위법·부당내용

- 아산시에서 조성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는 2014. 12. 24. 사용승인 이후 (주)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사업단과의 위탁기간 동안에는 임대차 계약을, 아산시 직영운영 기간에는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000 외7인 (이하 “수허가자”라고 함)으로 하여금 시설물을 사용하도록 허가 하였다.
 - 위탁기간: 2015.3.1.~2017.12.31.
 - 상가 임대차기간: 2015.4.1.-2017.12.31.
 - 사용수익허가 기간: 2018.1.1.~2018.12.31./ 2019.1.29.~2019.12.31.)
- 수허가자들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불법 증축으로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였고, 아산시에서는 철거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련법령

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허가조건 및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바 있다.

-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과에서는 증축에 따른 건축허가 협의 절차 이행 및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여 [표1]과 같이 3차례에 걸쳐 일부 시설물에 대한 증축을 이행하였으나, 1차 증축분에 대한 공사는 아산시가 아닌 수허가자가 직접 시공하였다.(공사 관련 계약서류 부존재 및 수허가자 주장)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등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거나,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제9조(공부 등록 등) 및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같은법 시행령 제6조(등기·등록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매년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과에서는 시설물의 증축 전 증축시설물에 대하여 기부채납 받을 것인지 또는 원상복구토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증축 사용승인 시 검토결과에 따라 기부채납 등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없이 건축물이 사용 승인되어 수허가자들이 본인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고,
-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를 조성하여 취득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등기·등록이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및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하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처분요구】

문화유산과장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잣거리 시설물 및 증축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기·등록 등 공유재산의 권리보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